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신설〉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1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 신설(안 제33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균택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9. 24.

다. 회 부 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 신설(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 <신설>	○ <u>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33조)</u> - 기재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체납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기재부에 고액·상습과태료 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를 둠 - 기재부장관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 -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 - 관보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제32조에서 과태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유별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3의2. 삭제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최근 5년간 불법외국환거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552건에서 2024년 837건으로 증가하였음.
부과 금액은 2021년 281억 7,300만원에서 2024년 383억 5,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사유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8월
제15조 (지급절차 등 위반)	건수	20	19	32	18	14
	금액	21,733	3,507	4,891	27,378	654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신고 위반)	건수	136	181	194	223	269
	금액	5,126	13,188	10,358	7,767	17,170
제17조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	건수	332	465	582	517	305
	금액	301	457	582	529	334
제18조 (자본거래 신고 위반)	건수	47	48	46	28	44
	금액	942	1,272	2,615	1,974	660
기타 (제20조 보고의무 위반 등)	건수	17	12	29	51	40
	금액	71	106	1,040	710	372
합계	건수	552	725	883	837	672
	금액	28,173	18,530	19,486	38,358	19,190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11.1%에서 2023년 40.0%까지 증가하고, 2024년에는 다시 23.8%로 감소하였음.

[연도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 현황(당해년도 고지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고지금액(A)	수납액(B)	수납률(B/A)
2021	28,173	3,116	11.1
2022	18,530	7,058	38.1
2023	19,486	7,786	40.0
2024	38,358	9,143	23.8
2025. 8월	19,190	17,199	89.6

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당해연도 부과해 당해연도 수납된 금액을 산출한 것임
 자료 :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과태료의 납부의무 위반사항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에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³⁾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관한 입법례]

구 분	근거법령	공개기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
국세	「국세징수법」 제114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지방세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
관세	「관세법」 제116조의2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세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는 존재하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 등에는 명단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114조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단공개 규정을 두면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서도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4)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시에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입법례에서는 재심의 전까지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소명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음.⁵⁾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소명기

5)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간은 별도로 정해두지 않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은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를 명단공개 대상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액·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예정자를 선정하는 시점에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한지 여부는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한 후, 공개대상예정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를 공개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고액·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는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3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체납내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 불능 상황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고액·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u>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155